

2021년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

<예방접종관리과, 2020. 12. 30.>

□ 배경

- 2021년부터 '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' 접종기관이 위탁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됨
 - * 위탁의료기관 한시적 확대 지원: 2020. 6. 22. ~ 2020. 12. 31.

□ 사업 내용

- (사업대상) 65세 이상 PPSV23 백신 접종력이 없는 어르신 (1956.12.31. 이전 출생)
- (지원내용) PPSV 23, 1회 접종 지원
- (지원비용) 예방접종 시행비 19,220원
 - ※ PPSV23 백신은 어르신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일한 총량구매-사전현물공급 방식으로 진행
- (접종기관)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

□ 예방접종 실시기준

- 접종백신 및 횟수: PPSV23 0.5ml, 1회 접종
 - ※ 자세한 실시기준은 「2021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(p86)」 참고

□ 위탁계약 체결 및 관리

- 1) 신규 위탁계약 체결 : '21.3.1.(월) 이전까지 서면계약 가능
 - 관련 근거 : 「감염병예방법」 제24조, 동법 시행령 제20조
 - 계약관련 서류
 - '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 수료증
 - 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서
 - 통장사본
 - '성인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' 참여확인증(어르신 폐렴구균 시행란 체크)
 - ※ '성인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' 참여확인증은 2021. 3. 2.부터 작성 가능

○ 계약 체결 희망 신규 의료기관 대상 교육 : 필수 요건

- 사업 참여 전 사업관련 온라인 교육 이수

* '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(2021)' (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, 운영기간: '21.3.2.~'22.2.28.)

2) '21.3.1. 까지 서면계약 위탁 의료기관 안내

○ 전자계약 전환을 위해 '21.3.2.(화) 이후 온라인 교육* 이수 필요

* '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(2021)' (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, 운영기간: '21.3.2.~'22.2.28.)

○ '21년도 온라인 교육 이수 후, 관련 서류 제출 및 보건소 승인 완료 시 계약 유효

- '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' 교육 수료증
 - 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서(기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의료기관은 제출 불필요)
 - 통장사본(기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의료기관은 제출 불필요)
 - '성인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' 참여확인증(어르신 폐렴구균 시행란 체크)
- ※ '성인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' 참여확인증은 2021. 3. 2.부터 작성 가능

□ **촉탁의를 통한 거동불편 어르신의 예방접종 관리**

○ (대상) 요양병원, 노인의료복지시설, 노인주거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사업대상 어르신

구분	촉탁의 유무	촉탁의 소속	사업 방식
요양 병원	-	-	◦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업무 위탁 계약 체결 후 위탁의료기관으로 사업 참여
사회 복지 시설	유	의료 기관 소속	◦ 촉탁의 소속 의료기관이 위탁의료기관으로 사업 참여 • 촉탁의 소속 의료기관에서 관할 보건소로부터 백신 배정 • 촉탁의가 주도하여 예진, 접종, 등록 실시 • 예방접종 시행비는 촉탁의 소속 의료기관에 상환 ◦ 촉탁의 소속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의 관할 보건소가 상이한 경우, 두 기관 간의 거리·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의 관할 보건소가 접종 시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
		개인 자격	◦ 신청기관에 한하여 사회복지시설 관할 보건소가 접종관리 * 촉탁의 협조가 있을 경우 촉탁의의 예진/접종이 가능하나, 시행비 청구는 불가하고, 백신 제공과 예방접종에 대한 관리는 보건소가 담당
	무	-	◦ 신청기관에 한하여 보건소가 접종관리* * ① 촉탁의가 없는 경우, 보건소는 위탁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이 단기적으로 촉탁의 계약을 체결하여 접종하도록 안내 ② 보건소가 보건소 백신으로 직접 접종 ③ 촉탁의 계약이 없을 시, 보건소 관리 하에 인근 위탁의료기관이 방문하여 접종하고 시행비 상환

□ 위탁의료기관 점검

-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: 연 2회(상·하반기)
- 보건소 방문점검: 연 1회 이상
- ※ 자세한 사항은 「2021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(p91~92, p108~112)」 참고

□ 협조사항

- 어르신 폐렴구균 사업 위탁의료기관은 빠른 시일 내에 계약 관련 업무를 완료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협조요청
- ※ '2021년 1분기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(가칭)' 추진 예정(상세 일정은 추후 안내)